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보 훈 보 상 대 상 자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김부겸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 의견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 12. 00. ~ 2022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상금 지급 구분표(제10조 관련)

1. 재해부상군경

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	상이등급별	월 지급액(천원)
1급 1항	2,327	5급	1,214
1급 2항	2,194	6급 1항	1,107
1급 3항	2,100	6급 2항	1,019
2급	1,867	6급 3항	684
3급	1,746	7급	365
4급	1,465		

2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구분	월 지급액(천원)
가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	
1) 배우자	1,226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1,421
3) 부모 또는 조부모	1,204
나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1,063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1,234
3) 부모 또는 조부모	1,046
다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390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563
3) 부모 또는 조부모	370

비고: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